



2005년도  
박사후연수과정지원사업 신청요강  
(국내·국외)

2005. 5.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

## 박사후연수과정지원사업 신규 대비표

| 항목    | 2004년   | 2005년   | 비고 |
|-------|---|---|----|
| 지원 대상 | ○ 대학 전임교원에 대한 언급 없음   | ○ 대학전임교원 신청 불가 명시   | 신설 |
| 연수 기관 | ○ 박사후연수과정 기수혜자의 경우 신규 신청 기관은 이전 연수기관과 다른 기관이어야 함  | ○ 박사후연수과정 기수혜자의 경우 기연수기관에서 재신청 가능   | 변경 |
| 신청 자격 |   | ○ 신진연구자연수지원사업의 기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설 |
| 제출 서류 | ○ 학과장 및 지도교수는 추천시 연수 신청자의 취업 상태 등을 파악한 후 연수가 가능할 경우에만 추천하여야 함. (정규직 및 전일제(Full Time) 근무자는 제외) | ○ 학과장 및 지도교수는 추천시 연수 신청자의 취업 상태를 파악한 후 연수가 가능할 경우에만 추천하여야 함. 전일제 취업자(Full Time)는 제외 | 변경 |

# 차 례

|                          |    |
|--------------------------|----|
| I.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     | 1  |
| 1. 사업목적 .....            | 1  |
| 2. 지원방향 .....            | 1  |
| II. 지원계획 .....           | 1  |
| 1. 지원분야 및 대상 .....       | 1  |
| 2. 지원 예산 .....           | 2  |
| 3. 지원규모 및 기간 .....       | 2  |
| III. 공모 및 신청 .....       | 3  |
| 1. 공모방법 .....            | 3  |
| 2. 신청방법 및 절차 .....       | 3  |
| 3. 서류 제출 .....           | 5  |
| 4. 신청자격 .....            | 5  |
| 5. 연수비신청 및 연수참여 제한 ..... | 6  |
| IV. 심사 및 선정 .....        | 8  |
| 1. 심사절차 .....            | 8  |
| 2. 심사방법 및 내용 .....       | 8  |
| V. 연수비 지급 및 관리 .....     | 10 |
| 1. 연수비 지급 .....          | 10 |
| 2. 연수비 관리 .....          | 11 |
| VI. 보고서 제출 및 평가 .....    | 11 |
| 1. 연수진행상황보고서 제출 .....    | 11 |
| 2.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   | 12 |
| VII. 연수자 사후관리 .....      | 14 |
| 1. 국내연수 사후관리 .....       | 14 |
| 2. 국외연수 사후관리 .....       | 15 |
| 3. 기타사항 .....            | 16 |
| VIII. 간접연구비 지원 .....     | 16 |
| IX. 행정사항 .....           | 16 |

※ 별첨 : 2005년 신청양식(국내, 국외)

## I. 사업목적 및 지원 방향

### 1. 사업목적

- 박사학위를 취득한 우수한 연구자의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의 연수기회 제공
- 신진학자 학술연구 활동의 지속성 유지

### 2. 지원방향

- 전 학문분야 지원
  - 국내 : 전 학문분야
  - 국외 : 인문·사회분야, 예술·체육학분야
- 우수한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국제 연수기회 확대
- 중점연구소를 연수기관으로 선택한 자 우대
- 여성 신청자 우대 (선정인원의 20% 내외)

## II. 지원계획

### 1. 지원분야 및 대상

#### 가. 지원분야

- 국내연수 : 전 학문분야
- 국외연수 : 인문·사회분야, 예술·체육학분야

#### 나. 지원대상

-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신청마감일 현재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국외연수의 경우 국내 학위 취득자에 한함)
  - ※ 대학 전임교원 제외
  -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다. 연수기관

- 연수기관은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외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함. 국외연수의 경우는 대학원이 설치된 외국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함
- ※ 연수기관은 신청자의 박사학위 취득대학과 다른 대학(기관)이어야 함
- ※ 박사후연수과정 기수혜자의 경우 기 연수기관으로 재신청 가능

## 2. 지원 예산 : 3,007,000천원 (신규과제)

## 3. 지원규모 및 기간

### 가. 지원규모

#### 1) 국내연수

- 연수지원금 : 1인당 연 1,800만원(월 150만원)
- 연수기관 지원금 : 국내연수자 1인당 연 100만원을 연수지도 및 학교 시설 이용 경비 등으로 연수기관에 별도 지원
- 각종 보험 부담금 : 기관에서 연수자에게 각종 보험을 가입하도록 할 경우 각종 보험 부담금(연 200만원) 추가 지원

#### 2) 국외연수

- 체재비 : 1인당 연 2,400만원 이내
- 항공료 : 정부예산 편성기준 왕복항공료 지급
-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재비는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 항공료는 정부예산 편성 기준을 참고하여 지급

### 나. 연수기간 : 1년

### 다. 선정과제 수 : 140과제 내외

### Ⅲ. 공모 및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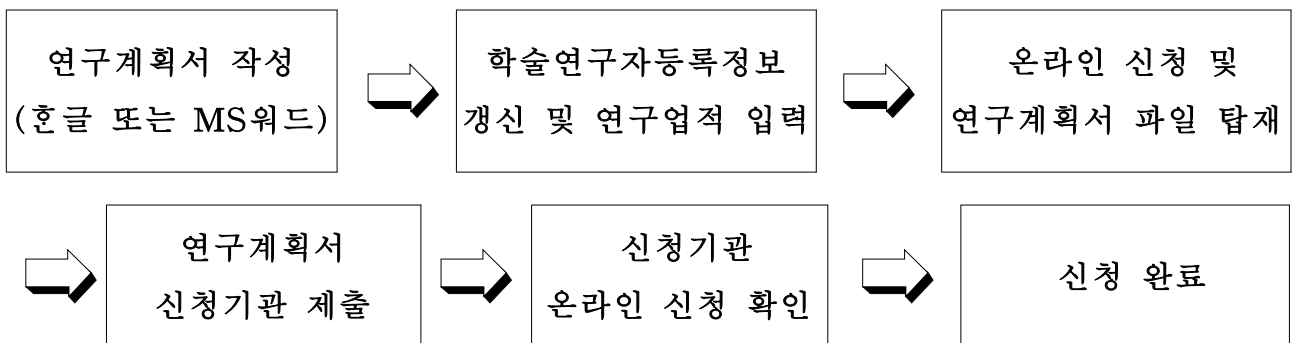
#### 1. 공모 방법

- 대학의 총(학)장에게 공문(e-mail)발송
- 재단 홈페이지(<http://www.krf.or.kr>)를 통하여 일괄 공고

#### 2. 신청 방법 및 절차

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재단 홈페이지 [www.krf.or.kr](http://www.krf.or.kr)에 접속)

##### 나. 신청 절차



##### 다. 온라인 신청 전

- 1) 국내연수자는 연수 희망 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와 협의를 통해 선정시 연구비 관리 여부 및 4대 보험 가입여부 확인
- 2) 국외연수자는 박사학위취득기관을 통해 국외연수 신청 가능여부 협의
- 3) 각 연구자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연구과제 신청 가능여부(결과보고 미제출 등) 확인 및 학술연구자등록에서 개인정보 수정(연구업적 등)
- 4) 온라인 신청시 연구계획서 작성 파일을 동시에 탑재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 세밀한 연구계획서 작성 (훈글 또는 MS 워드로 작성함)

## 라. 온라인 신청

- 1) 온라인 신청 기간 : 2005.6.14(화) ~ 2005.7.7(목) 18:00까지
- 2) 온라인 신청 주의 사항
  -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연구자가 입력한 신청내용 및 연구계획서 파일의 수정·교체가 가능하나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불가함
  - 온라인 신청이 완료된 과제는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온라인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원활한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계획 수립 후 신청기간 초기에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람

## 마. 온라인 신청 후

- 1) 연수자
  -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력내용(연수계획서 1부포함)을 출력하여 기타 제출자료와 함께 아래의 기관으로 제출
    - 국내연수 : 연수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
    - 국외연수 : 박사학위취득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에 제출
  - ※ 신청자는 해당기관의 연수계획서 제출 마감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함
- 2) 해당 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
  - 온라인 신청 확인 시한 : 2005. 7. 12(화) 18:00까지
  - 해당 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는 연수자의 온라인 신청여부 및 내용을 재단 홈페이지에서 기간 내에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하지 않음
  - 온라인 신청 확인 시 각종 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각종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만 보험 부담금이 지급됨
  - 연수자로부터 제출 받은 연수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및 신청 명단은 재단으로 별도 송부하지 않고 보관함

### 3. 서류 제출

#### 가. 공통서류

- 연수계획서 1부
- 박사학위취득 학위기 사본 1부  
(2005년 8월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박사학위 취득 예정증명서 1부)
- 대표연구업적 요약문 1부
- 박사학위논문 요약문 1부
- ※ 박사후연수과정 기수혜자는 기수혜과제의 내용을 요약하여 1부 제출

#### 나. 국내연수

- 연수기관의 학과장 및 지도교수 추천서 각 1부
- ※ 학과장 및 지도교수는 추천시 연수 신청자의 취업 상태 등을 파악한 후 연수가 가능할 경우에만 추천하여야 함 (전일제 취업자(full-time)는 제외)

#### 다. 국외연수 : 초청장 또는 연구계획 관련 교환서신 사본(e-mail 가능)

- ※ 모든 외국어서류는 번역본 첨부

#### 라. 서류 제출처

-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시 입력한 연구계획서 1부와 제출 자료를 아래의 기관으로 제출함
  - 국내연수 신청자 : 연수신청기관 연구비 담당부서
  - 국외연수 신청자 : 박사학위 취득 기관 연구비 담당부서

### 4. 신청 자격

-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005년도 8월 박사학위취득 예정자 신청 가능
- 박사후연수과정 기수혜자 신청 가능 (총 2회까지 수혜가능)
-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함

■ 2000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국제학술지 게재논문(A&HCI급·SSCI급·SCI급(SCI 및 SCIE 등)), 등록 완료된 외국 특허 또는 전문학술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등의 연구실적이 1편 이상인 연구자

※ 단,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급 등의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심사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연구지원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06년도 사업부터 신청자격기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며, 세부사업별 구체적 기준은 '05년 말에 공고할 예정임

## 5. 연수비 신청 및 연수참여 제한

### 가. 연수비 신청 제한

- 국내연수의 경우 박사학위취득기관에서 연수를 신청할 수 없으며,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국외연수를 신청할 수 없음
  -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음
- BK21사업의 박사후연수과정자(계약교수 포함)는 신청할 수 없음
- 1인이 국내와 국외연수에 동시 신청할 수 없음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의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보고서 평가에서 D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단, 1999년 이전 지원과제는 D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재단의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의 강의과전, 그리고 과학기술부 이관사업의 박사후해외연수지원사업 수혜자 중 연구기간(지원기간)이 중복되는 자
- 박사후연수과정지원 2회 이상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진연구자연수지원사업의 기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나. 연구 참여 제한

- 본 박사후연수과정지원사업 내에서는 1인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2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박사후연수과정지원사업의 참여자는 연구책임자 1과제에 해당함).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5. 12. 31 이전인 과제는 연간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6. 1. 1. 이후인 과제라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 및 재단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과 과학재단 이관사업 중 선도과학자육성지원연구, 우수여성과학자도약지원연구, 젊은과학자연구활동지원, 유망여성과학자경쟁력강화지원연구지원사업의 계속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는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6. 1. 1. 이후인 선도기초과학연구실(ABRL)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1과제 수행하는 것으로 하되 기타 참여연구원은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 ※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단,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5.12.31 이전인 과제는 연구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나 기수행중인 과제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인건비 지급

은 중지하고 신규지원사업 연구비에서 지원함

※ 교육인적자원부 두뇌한국(BK)21사업 참여자(지역대학육성분야사업 제외)는 재단 연구지원사업에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 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음

※ 재단으로부터 연구비 지급 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최종선정에서 제외함

## IV. 심사 및 선정

### 1. 심사절차

| 단 계 별 | 심 사 내 용 |   |
|-------|---------|---|
| 1 단계  | 요건심사    | - 정보시스템에 의한 확인 검사<br>-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여부 |
| 2 단계  | 전공심사    | - 연구자 업적(대표논문 포함)<br>- 연구계획서            |
| 3 단계  | 종합심사    | - 예산배정 및 과제 선정                          |

### 2. 심사방법 및 내용

#### 가. 제 1 단계 심사 : 요건심사

- 심사방법 :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확인 심사
-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및 요건 저촉여부 등

#### 나. 제 2 단계 심사 : 전공심사

- 심사방법 : 온라인 패널심사
- 심사내용
  - ※ 심사자에게 공정한 심사의 책무 등을 서약받아 심사자의 책임성 고취

○ 심사항목

| 구 분   | 심사항목      | 측정지표          | 심사내용  |
|-------|-----------|---------------|---|
| 연구주제  | 독창성       | 주제의 창의성 및 독자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주제인가</li> <li>○ 고유한 지식체계를 창출하는가</li> <li>○ 새로운 지식 또는 이해를 창출하는가</li> <li>○ 새로운 해석이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가</li> </ul>                   |
|       |           | 방법의 창의성 및 독자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창적인 연구방법론을 모색하는가</li> <li>○ 새로운 자료수집 방법(도구)을 시도하는가</li> <li>○ 새로운 분석기법을 활용하는가</li> </ul>  |
|       | 학문발전 공헌도  | 학문적 가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이론을 발전시키는가</li> <li>○ 기존의 연구방법론을 발전시키는가</li> </ul>   |
|       |           | 학문의 파급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많은 후속연구를 파생할 수 있는가</li> <li>○ 학문적 담론을 활성화하는가</li> </ul>  |
| 실현가능성 |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의 필요충분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내용 범위가 적절한가</li> <li>○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괄하는가</li> <li>○ 포함된 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것들인가</li> </ul>   |
|       |           | 연구방법의 타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문제 해결에 적합한 접근방법인가</li> <li>○ 자료수집 방법은 적절한가</li> <li>○ 자료분석(실험 또는 이론 계산) 및 결과해석방법은 적절한가</li> </ul>  |
|       |           | 실행계획의 구체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수집 대상, 도구, 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li> <li>○ 자료분석 및 결과해석을 위한 자료의 정리, 분석 도구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li> <li>○ 연구수행과정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li> </ul> |
|       | 선행연구      | 선행연구의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한 선행연구들이 빠짐없이 검토되었는가</li> <li>○ 선행연구들은 정확하고 치밀하게 분석되었는가</li> </ul>   |
|       |           | 인용 및 참고문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용이 철저하게 되어있는가</li> <li>○ 참고문헌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li> </ul>   |
|       | 연구역량      | 연구실적 및 연구능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li> <li>○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li> </ul>  |
|       | 연수의 필요성   | 연수의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수기관이 적합한가</li> <li>○ 연구과제와 국외연수기관과의 목적 수행이 적절한가 (국외연수)</li> </ul>   |

○ 과제별 평가점수 산출 : 표준점수제에 의한 극단점수 배제 후 산술평균

#### 다. 제 3 단계 심사 : 종합심사

- 예산배정 : 기본배정 10%, 추세변동 40%, 당해연도 신청 40%, 정책적 고려 10%
- 선정기준 확정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선정과제를 공개하여 여타 연구비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함

## V. 연수비 지급 및 관리

### 1. 연수비 지급

#### 가. 지급방법

- 1) 국내연수 :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지급
- 2) 국외연수 : 본인의 국내 계좌로 송금

#### 나. 지급 시기

- 1) 국내연수
  - 협약서 체결 후 연수기관의 연구비중앙관리계좌로 지원금을 전액 송금하고, 연수기관은 연수자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함
- 2) 국외연수
  - 항공료 : 출국경비 신청서류 접수 후 지급함
  - 체재비 : 협약서 체결 후 왕복항공료와 전기분 체재비(6개월분)를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함께 지급하고, 후기분은 연수개시보고서 및 연수지도교수 확인서 접수 후 체재비를 본인의 국내 은행구좌에 송금함

## 다. 연수비 사용

- 1) 국내연수 : 연수기관의 산학협력단장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은 과제별 협약 체결 후 연수비를 집행하여야 함
- 2) 국외연수 : 협약체결 후 연수자 개인이 집행함

## 2. 연수비 관리

- 국내 연수의 경우 연수비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이 중앙관리하여야 하며, 국외연수의 경우 연수자 개인이 직접 관리하도록 함.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학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연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청자격을 박탈함
  - 지원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지원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 연구진행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및 표절 등으로 하였을 때
  -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과제 관리지침(연구계획서 포함)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 VI. 보고서 제출 및 평가

### 1. 연수진행상황보고서 제출

#### 가. 국내연수

- 1) 월별 연수지도확인서 : 해당기관 연구업무 담당부서에서는 매월 연수지도 교수의 월별 연수지도확인서를 접수함
- 2) 연수진행상황보고서 : 연수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

## 나. 국외연수

- 1) 연수착수보고서 : 연수국 도착일부터 1개월 이내
  - 2) 연수지도교수확인서 : 연수국 도착일부터 4-6개월 이내
  - 3) 연수진행상황보고서 : 연수국 도착일부터 4-6개월 이내
  - 4) 귀국보고서 : 연수종료 후 2개월 이내
- ※ 연수진행상황보고서 접수 후 후기분 연수비 계속 집행

## 2.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 가. 결과보고서 제출

- 1) 제출 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 2) 제출 방법 : 온라인으로 제출
- 3) 제출 자료

가) 연구결과보고서 1부

나)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1부

다) 연구결과요약문 1부 (국·영문)

라) 출입국증명서 1부 (국외연수자에 한함)

※ 국문 연구요약문은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

- 4) 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당초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비를 회수하고 향후 2년간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신청을 제한함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및 표절 등을 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재단 관리지침 및 협약에 의거한 제재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함.

## 나. 연구결과발표물 제출

### 1) 연구결과발표물 제출에 대한 책무

연구결과는 국내·외 전문학술지(재단 등재(후보)학술지, SCI&SCIE급)에 1편 이상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고, 해당 논문 별쇄본 또는 학술 저서를 제출하여야 함

### 2) 연구결과발표물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치 아니함

### 3) 연구결과발표물에는 아래 내용을 표기하여야 함

- 국문표기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5-037-과제번호)”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OEHRD)(KRF-2005-037-과제번호)”

### 4) 연구결과 발표물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 연구 결과를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학술저서로 출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게재 사유서를 제출함
  - 미게재 사유가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결과보고서 평가결과 D등급과 동일 적용
  - 미게재 사유가 합당한 경우에는 재단의 소정 평가절차에 따라 제출된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통과된 과제는 가능한 학술지에 게재를 권장하며, C, D등급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연구비 지원을 일정 기간(C급 3년, D급 5년) 제한함
  - 당초 계획된 연구결과의 미도출로 논문게재가 불가능한 경우는 연구과정 및 결과를 제출 받아 성실성과 적합성을 별도로 평가함



#### 다. 연구결과 사후관리

- 연구결과보고서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함
  - 원문정보서비스(Full-text service) 실시
  - 연구현황, 통계 등의 작성 및 제공

#### 라. 연구성과 Follow-up 시스템

-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연구결과발표물 제출 후에라도 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물(논문, 저서, 보고서, 특허, 기술, 발명, 세제인명사전 등재, 언론보도, 인력양성 실적 등)을 게재하여야 함

## VII. 연수자 사후관리

### 1. 국내연수 사후관리 (연수중단 등에 대한 사항)

#### 가. 6개월 미만 연수중 중단시

- 3개월 미만 연수중 중단시 : 연수일까지의 연수비를 제외한 잔액반납, 연수경과보고서 제출 후 종료, 연수기관지원금 전액 반납, 보험부담금 잔액 반납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수중 중단시 : 연수일까지의 연수비를 제외한 잔액반납, 연수중간보고서 제출 후 종료, 연수기관지원금 50% 반납, 보험부담금 잔액 반납

#### 나. 연수 6개월이상 ~ 9개월미만 연수중 중단시

- 연수일까지의 연수비를 제외한 연수비 잔액을 반납하고 연구시기까지의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함
- 대학전임교원으로 임용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의 학술연구비 수혜기관으로 취업한 후 연수를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수비 잔액

을 임용기관으로 송금하여 연구비로 사용토록 하고 당초 연수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연구를 종결토록 함 (최종보고서 제출 의무화)

※ 학술연구비 미수혜기관, 대학이외 기관 및 국외에 취업 시는 연수를 중단하고 연수중단보고서를 제출 후 연구 종료

○ 연수기관지원금 반납 없음, 보험부담금 잔액 반납

#### 다. 연수 9개월 이상 연수후 중단시

○ 연수비 잔액을 연구비로 지급하고 당초 연구계획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종결토록 함 (최종보고서 제출 의무화)

○ 부득이하게 연수를 포기하는 경우 연수비 잔액을 반납받고 그 시기까지의 연구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함

○ 연수기관지원금 반납 없음, 보험부담금 잔액 반납

## 2. 국외연수 사후관리

### 가. 연수중단 등에 대한 사항

○ 연수자가 연수도중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연수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에 대한 체재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하고, 그 시기까지의 결과를 정리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시 및 조기귀국허용일수 산정기준일은 재직증명서상의 중단일을 기준으로 하고 적용일수는 다음과 같다

※ 1개월 ~ 6개월 : 7일

7개월 ~ 12개월 : 15일

나. 국외연수자의 출국기한은 관리지침의 원칙에 따르되 현지사정 등으로 조기에 출국할 경우에는 연수개시일을 재단에서 따로 정함

다. 연수자는 연수기간중 일시 또는 조기귀국 일시가 연간 15일 이상이 될 경우 체재비를 환수함

- 일할 반납조치 : 일시 및 조기귀국 기간이 위의 허용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대하여 일할 반납토록 함 (귀국일 또는 귀국한 날 중 1일은 제외)

- 전액 회수 : 무리한 일시귀국 또는 임의의 조기귀국 등으로 당초의 파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연수지원금 전액을 회수함

### 3. 기타사항

- 연수대학은 연수생에게 도서관, 전산실, 실험실 이용 등 연수활동에 필요한 편의와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VIII. 간접연구비 지원

지원 대상 사업이 아님

## IX. 행정사항

- 심사 학문분야는 재단 홈페이지 『연구분야분류표』를 참고하여 심사희망 분야명을 정확하게 선택하기 바람
- 신청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자료를 입력할 경우 신청 및 지원을 취소할 예정 이므로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 문 의 처

(137-748)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력양성팀

사업내용 문의 : TEL (02)3460-5647 FAX (02)3460-5630

온라인신청시 문의 : TEL (02)3460-5544

# 2005 박사후연수과정지원 국내연수 신청양식

## ▶ 제출서류

1. 박사학위취득 학위기 사본 1부
2. 연수지도교수 추천서 1부 <양식 1>
3. 연수기관 학과장 추천서 1부 <양식 2>
4. 연수계획서 (A4용지 10~20매 내외 분량으로 작성) <양식 3>
5. 대표업적 요약문 1부 <양식 4>
6. 박사학위논문 요약문 1부 <양식 5>
7. 박사후연수과정 기수혜과제 연구결과의 내용을 요약하여 1부 제출 <양식 6>  
(기수혜자만 해당됨)

## ▶ 온라인 신청 연수계획서 파일 탑재

- 온라인 신청시 탑재하는 연수계획서 파일에는 연수계획서(양식 3), 대표업적 요약문(양식 4), 박사학위논문 요약문(양식 5)이 포함되어야 함.  
(기타 양식은 탑재하지 않음)
- ※ 기수혜자의 경우 기선정과제의 연구결과요약 포함

## ▶ 연수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본 연수계획서의 내용은 반드시 한글 또는 MS 워드로 작성하고, 작성시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도 용지를 이용할 것
- 본 연수계획서 기재 사항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추후라도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양식 1>

# 연수 지도교수 추천서

## ▣ 추천의견

|              |     |        |   |
|--------------|-----|--------|---|
| 신 청 자        | 국문) | 주민등록번호 | - |
|              | 영문) |        |   |
| 연 수<br>과 제 명 |     |        |   |
| 추천의견 :       |     |        |   |

상기자는 학문적 역량이 뛰어나고, 연구의욕이 왕성한 연구자로서 귀 재단에서 수행하는 박사후연수과정지원사업에 추천하며, 연수자가 연수를 종료할 때까지 지도교수로서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2005년      월      일

추천인(연수지도교수)

소속기관 :                      소속학과 :  
직위 :                              성명 :                              (인)

※ 추천인은 신청자의 취업 상태 등을 파악하여 연수가 가능할 경우에만 추천하여야 함 (전일제(full-time) 취업자 제외)

<양식 2>

## 연수기관 학과장 추천서

### ■ 추천의견

|           |     |        |   |
|-----------|-----|--------|---|
| 신청자       | 국문) | 주민등록번호 | - |
|           | 영문) |        |   |
| 연수<br>과제명 |     |        |   |
| 추천의견 :    |     |        |   |

상기자는 학문적 역량이 뛰어나고, 연구의욕이 왕성한 연구자로서 귀 재단에서 수행하는 박사후연수과정지원 사업의 신청에 추천하며, 연수자가 연수를 종료할 때까지 소속 학과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2005년      월      일

추천인(학과장)

소속기관 :

소속학과 :

직위 :

성명 :

(인)

※ 추천인은 신청자의 취업 상태 등을 파악하여 연수가 가능할 경우에만 추천하여야 함 (전일제(full-time) 취업자 제외)

# 연수 계획서

|       |    |  |
|-------|----|--|
| 연수과제명 | 국문 |  |
|       | 영문 |  |

※ 아래의 각 항목별로 기술하되, 총 10매~20매 내외 분량으로 작성하십시오.

## 1. 연수의 필요성

(연수기관의 적정성 포함)

## 2. 연수(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주제의 독창성, 연구업적과 계획의 체계적 연계성)

## 3. 연수(연구)의 내용, 방법, 범위

(연구의 설계, 내용, 방법 등의 창의성, 논리성 및 구체성 등)

## 4. 연수(연구)과제의 국내외 연구동향 (연구배경)

(연구논문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학위논문의 활용과 파급효과의 정도 및 교육에의 활용정도 등)

## 5. 연수(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6. 참고문헌(선행연구의 검토 포함)

<양식 4>

## 대표 연구업적 요약문

※ 발표된 논문의 초록을 입력하되, 초록이 없을 경우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온라인 신청시 선택하는 대표업적 1편과 같은 것으로 작성하여야 함.

|               |  |
|---------------|--|
| 업적 형태 구분      | 저서( ) 역서( ) 학술지( ) 외국특허( )   |
| 논문(저·역서,특허)제목 |  |
| 학술지(저·역서/특허)명 |  |
| 학술지 구분        |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br>A&HCI급, SSCI급, SCI&SCIE급 학술지 ( )<br>국내기타학술지( ), 국외기타학술지( ) |
| 발행연도(권/호 포함)  |  |
| 발행(출판)기관      |  |
| 연구업적 참여자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이상( )  |
| 역할구분          | 연구책임자 ( ) 공동연구자( )   |

### 【내용요약】

※ 2매 이내 작성



<양식 5>

## 박사학위논문 요약문

(2005년도 박사후연수지원사업)

|  |  |
|--|--|
| 박사학위 논문제목                                      |  |
| ※ 아래 해당사항(*)은 동 박사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게재한 경우 기재하시기 바람 |  |
| *학술지(저·역서/특허)명                                 |  |
| *학술지 구분  | 재단 등재(후보)학술지(),<br>A&HCI급, SSCI급, SCI&SCIE급 학술지 ()<br>국내기타학술지(), 국외기타학술지() |
| *발행연도(권/호 포함)                                  |  |
| *발행(출판)기관                                      |  |
| *연구업적 참여자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이상( )  |

### 【내용요약】

※2매 이내 작성

<양식 6>

## 박사후연수과정 연수과제 결과 요약

(※박사후연수과정 기수혜자만 해당)

|   |  |      |  |
|---|--|------|--|
| 선정연도  |  | 연수국가 |  |
| 연수기관명                                       |  |      |  |
| 연수과제명                                       |  |      |  |
| ※ 아래 해당사항(*)은 연수결과물을 학술지 등에 게재한 경우 기재하시기 바람 |  |      |  |
| *학술지(저·역서/특허)명                              |  |      |  |
| *학술지 구분                                     | 재단 등재(후보)학술지(),<br>A&HCI급, SSCI급, SCI&SCIE급 학술지 ()<br>국내기타학술지(), 국외기타학술지() |      |  |
| *발행연도(권/호 포함)                               |  |      |  |
| *발행(출판)기관                                   |  |      |  |

※2매 이내 작성

# 2005 박사후연수과정지원 국외연수 신청양식

## ▶ 신청시 제출서류

1. 박사학위취득 학위기 사본 1부
2. 초청장 또는 연구계획 관련 교환서신 사본(E-mail도 가능) 및 번역본  
※ 교환서신 또는 E-mail의 경우 초청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된 해당 부분만 제출할 것.
3. 연수계획서 (A4용지 10~20매 내외 분량으로 작성) 1부 <양식 1>
4. 박사학위논문 요약문 1부 <양식 2>
5. 대표업적 요약문 1부<양식 3>
6. 박사후연수과정 기수혜자는 기수혜과제의 내용을 요약하여 1부 제출 <양식 4>  
(기수혜자만 해당됨)

## ▶ 온라인 신청 연수계획서 파일 탑재

- 온라인 신청시 탑재하는 연수계획서 파일에는 연수계획서(양식 1), 대표업적 요약문(양식 2), 박사학위논문 요약문(양식 3)이 포함되어야 함  
(기타 양식은 탑재하지 않음)
- ※ 기수혜자의 경우 기선정과제의 연구결과요약 포함

## ▶ 연수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본 연수계획서의 내용은 반드시 한글 또는 MS 워드로 작성하고, 작성시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도 용지를 이용할 것
- 본 신청서 및 연수계획서 기재 사항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추후라도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양식 1>

# 연수 계획서

|       |    |  |
|-------|----|--|
| 연수과제명 | 국문 |  |
|       | 영문 |  |

※ 아래의 각 항목별로 기술하되, 총 10매~20매 내외 분량으로 작성하십시오.

## 1. 연수의 필요성

(연수기관의 적정성 및 국외연수의 필요성 포함)

## 2. 연수(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주제의 독창성, 연구업적과 계획의 체계적 연계성)

## 3. 연수(연구)의 내용, 방법, 범위

(연구의 설계, 내용, 방법 등의 창의성, 논리성 및 구체성 등)

## 4. 연수(연구)과제의 국내외 연구동향 (연구배경)

(연구논문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학위논문의 활용과 파급효과의 정도 및 교육에의 활용정도 등)

## 5. 연수(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6. 참고문헌(선행연구의 검토 포함)

<양식 2>

## 대표 연구업적 요약문

(2005년도 박사후연수지원사업)

※ 발표된 논문의 초록을 입력하되, 초록이 없을 경우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온라인 신청시 선택하는 대표업적 1편과 같은 것으로 작성하여야 함.

|               |  |
|---------------|--|
| 업적 형태 구분      | 저서( ) 역서( ) 학술지( ) 외국특허( )   |
| 논문(저·역서,특허)제목 |  |
| 학술지(저·역서/특허)명 |  |
| 학술지 구분        |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br>A&HCI급, SSCI급, SCI&SCIE급 학술지 ( )<br>국내기타학술지( ), 국외기타학술지( ) |
| 발행연도(권/호 포함)  |  |
| 발행(출판)기관      |  |
| 연구업적 참여자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이상( )  |
| 역할구분          | 연구책임자 ( ) 공동연구자( )   |

### 【내용요약】

※2매 이내 작성

<양식 3>

## 박사학위논문 요약문

(2005년도 박사후연수지원사업)

|  |  |
|--|--|
| 박사학위 논문제목                                      |  |
| ※ 아래 해당사항(*)은 동 박사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게재한 경우 기재하시기 바람 |  |
| *학술지(저·역서/특허)명                                 |  |
| *학술지 구분  | 재단 등재(후보)학술지(),<br>A&HCI급, SSCI급, SCI&SCIE급 학술지 ()<br>국내기타학술지(), 국외기타학술지() |
| *발행연도(권/호 포함)                                  |  |
| *발행(출판)기관                                      |  |
| *연구업적 참여자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이상( )  |

### 【내용요약】

※2매 이내 작성

|  |
|--|
|  |
|--|

<양식 4>

## 박사후연수과정 연수과제 결과 요약

※ 박사후연수과정 기수혜자만 해당

|   |  |      |  |
|---|--|------|--|
| 선정연도  |  | 연수국가 |  |
| 연수기관명                                       |  |      |  |
| 연수과제명                                       |  |      |  |
| ※ 아래 해당사항(*)은 연수결과물을 학술지 등에 게재한 경우 기재하시기 바람 |  |      |  |
| *학술지(저·역서/특허)명                              |  |      |  |
| *학술지 구분                                     | 재단 등재(후보)학술지(),<br>A&HCI급, SSCI급, SCI&SCIE급 학술지 ()<br>국내기타학술지(), 국외기타학술지() |      |  |
| *발행연도(권/호 포함)                               |  |      |  |
| *발행(출판)기관                                   |  |      |  |

### 【내용요약】

※2매 이내 작성

# 박사후연수과정지원사업 FAQ

## 1. 전년도와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 박사후연수과정지원 기수혜자의 경우 신규 신청시 이전 연수기관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 2. 한국과학재단 이관사업인 신진연구자연수지원사업의 기수혜자가 동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아니요, 신청 불가능합니다.

## 3. 해외 Post-doc.연수지원과 박사후연수과정지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 해외 Post-doc.연수지원사업은 2004년에 과학기술부로부터 이관된 사업으로 이공계분야의 해외 Post-doc.연수를 지원합니다.

박사후연수과정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연수와 국외연수가 있으며, 국내연수는 전학문 분야를 지원하고, 국외연수는 인문사회분야·예술체육학 분야를 지원합니다.

또한, 박사후연수과정지원에서는 대학 전임교원은 신청 불가능하나, 해외 Post-doc.연수지원사업에서는 대학의 전임교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 4. 동사업에 선정된 연구자의 보험 혜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연수기관에서 연수자에게 각종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경우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는 기관의 보험 부담금(2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우선, 해당 연수기관에 문의하시어 보험가입지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이 가능한 연수기관에서는 온라인 신청 확인시 보험 가입을 선택하시면 보험 부담금이 지원됩니다.

## 5. 금년도 기초학문지원사업에 연구전임인력으로 신청한 연구원입니다. 박사후연수과정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초학문지원사업에서 선정되면 박사후연수과정지원사업 선정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6. 2005년 8월 박사학위취득예정자도 신청가능합니까?

▶ 네, 신청가능합니다.

## 7. 연수지도교수 추천시 기준은 무엇입니까?



- ▶ 연수지도교수는 연수자의 취업상태를 파악하여 연수자가 충실한 연수가 가능할 경우에만 추천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연구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일제 취업자(full-time)는 추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8. 연수계획서 파일을 탑재할 때 무엇을 탑재해야 합니까?

- ▶ 기타 다른 서류는 탑재하지 마시고, 연수계획서, 대표 연구업적 요약문, 박사학위논문 요약문을 하나의 파일로 작성하여 탑재하시기 바랍니다. (박사후연수과정지원 기수혜자는 기수혜 과제의 연구요약 포함)